



규정

다문화가족학생지원 규정

문서번호	TWP-A511
제정일자	2015. 09. 15.
개정일자	2018. 02. 19.
개정번호	1
페이지	1/3

목 차

- 제1조 목적
- 제2조 정의
- 제3조 구성
- 제4조 지원 및 기능
- 제5조 지원업무 담당자 교육
- 제6조 장학금 지급
- 제7조 회의
- 제8조 보칙

부칙

작성부서	학생처	제정일자	2015. 09. 15.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승 인	
직 책	담 당		학생처장	교무처장	기획홍보처장	총 장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	규정	문서번호	TWP-A511
		제정일자	2015. 09. 15.
	다문화가족학생지원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1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필요한 교수·학습·시설·설비 등을 지원하여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다문화가족 학생”이란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가족인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구성) 다문화가족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지원을 위하여 본교 학생취업처 내 다문화가족학생 지원 담당자를 둔다.

제4조(지원 및 기능) 다문화가족학생 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다문화가족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
- ②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사 및 진로, 취업상담에 관한 사항
- ③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지원업무 담당자 교육) 다문화가족 학생지원업무 담당자는 다문화 가족 학생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장학금 지급) 다문화가족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학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7조(회의) 다문화가족 학생의 지원 및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요청이 있을 때는 학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8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제반 규정이나 다문화가족 학생지원 관계법령에 준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